

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1월 24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1월 25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

•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(2025. 12. 2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윤천수 관광산업과장)

가. 개정이유

○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관광사업자와 관광사업자 단체에서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·단체·개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○ 관광설명회, 박람회 등 관광시책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·단체·개인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함(안 제4조제2항)

○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설명회, 박람회 등 관광시책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홍보물품 제공하는 조항 신설(안 제4조제3항)

다. 관계법령

○ 「관광진흥법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장준호)

-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다양한 주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확대하고, 관광설명회·박람회 등 관광시책사업 참여자에게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, 본 조례의 개정으로 관광산업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관광홍보·유치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관광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여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,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관광설명회·박람회 등 관광시책사업 참여자에게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, 과도하거나 무분별한 물품 제공이 이루어질 경우 선심성 집행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므로, 지원 목적·대상·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관련 집행이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「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1. 수정이유

- 안 제4조제1항의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어 개인을
개인사업자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사항

-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
정한다.
- 안 제4조제1항의 “개인”을 “개인사업자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재정지원 등) ① ----- ----- <u>관광사</u> <u>업자,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</u> <u>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, 단</u> <u>체, 개인에 대하여</u> ----- ----- -----.	제4조(재정지원 등) ① ----- ----- <u>관광사업</u> <u>자,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</u> <u>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, 단</u> <u>체, 개인사업자에 대하여</u> ---- ----- -----.